

호주의 수입식품 신고절차 및 표시기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I. 수입식품 신고절차

1. 수입식품 검사프로그램 개요

(Imported Food Inspection Program)

호주의 수입식품검사 프로그램은 검역검사국(AQIS ;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과 국가식품청(NFA : National Food Authority)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AQIS는 전반적인 수입식품 관리를 하고 있고, NFA에서는 수입식품관리에 필요한 식품위해평가 등 정책개발에 관여하고 있다.

호주로 수입되는 식품의 검사는 수입식품관리법 1992(Imported Food Control Act)를 근거로 하여 검역검사국(AQIS)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준 및 규격은 호주식품공전(Australian Food Standards Code)에 의하여 적용받으며, 식품공전은 국가식품관리법 1991(National Food Authority Act)에 의거 NFA에서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이 자료는 AQIS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식품을 수출하는 관계자와 수출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수입식품의 신고 절차

(Entering food for importation)

일반적으로 모든 물품(식품 포함)의 수입은 호주 관세청(Customs Service ; ACS)의 공식적인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과정은 관세청 산하 세관(Custom House)에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거나, 전자문서방식에 의한 관세청 전산 상업망(Commercial System)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수입업자 또는 관세업무대행업자가 수입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을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한 세부사항은 AQIS에 의뢰한다.

전자방식에 의한 신고시 제품이 수입식품 검사프로그램(IFIP)에 따라 검사받는 경우, 그 내용은 자동적으로 전산 상업망 통관안내화면(Commercial Systems entry status screen)을 통해 수입업자/관세업무대행업자에게 전달되며 화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신고한 제품은 수입식품관리법에 의한
검사대상식품입니다.
동 제품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고가 수작업으로 세관에서 처리되는 경우, 신고사항이 확인된다. IFIP로 신고되는 경우 통관인수사

본(delivery copy the entry)에 IFIP 수하물표시 (impediment message)를 함께 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AQIS는 동·식물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다. 만일 식품이나 포장물질이 검역대상이라면 검역면장 (Quarantine clearance)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후에 경우에 따라서 수입업자 또는 관세업무대행업자는 전산 상업망신고화면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수입업자 또는 관세업무대행업자는 선적화물이 최종적으로 IFIP에 의해 통관 승인되기 이전에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으며 그 정보는 전산 상업망을 통해 알 수 있다.

3. IFIP 관리 대상식품은?

(What food is subject to the IFIP?)

IFIP에서의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방법은 세가지의 종류가 있다.

가. 위해 식품(risk categorized food)

위해로 분류된 모든 식품. 검사정도는 수출업자의 적합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뢰도가 높은 수출업자는 적합률이 낮은 업자에 비해 검사를 적게 받도록 되어 있다.

나. 집중감시(activce surveillance)

일정기간 즉, 통상적으로 6개월간 동안 특정 식품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때 선정된 식품은 원산지당 약 10%의 비율로 검사를 받는다.

예를 들면, 초콜렛이 집중감시대상으로 분류된다면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된 초콜렛의 10%, 오스트리아산 초콜렛 10%, 덴마크산 초콜렛 10% 등이 AQIS 수입 신고시 적용 받는다.

다. 무작위 감시(Random surveillance)

모든 수입 식품에 5%를 선정하여 적용 검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4. IFIP 검사 절차

(Obtaining a clearance from the IFIP)

가. 위해 식품(Risk categorised food)

AQIS 검사원은 수입자 또는 관세업무대행업자에게 식품이 검사대상인지 여부를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없이 통관될 수 있다.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검사원은 해당 인증서(보통 식품관리인증서 ; Food Control Certificate)를 발행할 것이다.

만일 수입식품이 검사대상이라면 담당 공무원은 제품의 검사와 시료채취를 위해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조정할 것이다. 보통 중간위해식품 (medium risk food)은 시료채취한 후 유통 판매할 수 있으나, 고위해식품(high risk food)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정밀검사 결과가 판정될 때까지는 유통판매할 수 없다.

나. 집중감시식품이나 무작위감시식품

(Food under active surveillance or random surveillance)

ACS(관세청)에서 AQIS로 검사 의뢰된 모든 집중감시식품 및 무작위감시식품은 검사 결과 제품이 명백한 결함이 없다면 수리된다.

이때 해당 지역의 수입식품검사과로 문의하여서 제품 검사 및 시료채취에 관한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협의하여야 된다.

다. 억류명령 식품(Food under holding orders)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분석결과가 호주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수출업자의 식품은 억류명령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억류된 제품의 검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정될 때까지는 유통판매할 수 없다.

5. IFIP 검사방법

(What happens in an IFIP inspection?)

AQIS IFIP 검사원은 NFA에서 설정한 호주식품 공전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하고, AQIS 검사원은 모든 해당식품의 표시사항과 일반적인 관능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원은 영어로 표기된 표시사항과 거래내역,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인적사항, 원산지, 롯트번호 및 날짜표기(경우에 따라)를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호주식품공전에는 성분명 기재(ingredient listing), 영양표시 및 인쇄크기 등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정하여져 있다.

검사시, 담당공무원은 미생물학적 검사, 잔류농약 검사, 첨가물과 성분배합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과 이유를 수입자 또는 관세 업무대행업자에게 통보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수입자의 제품은 이후에도 분석검사를 위해 시료채취될 수 있다.

호주분석실험실(AGAL; Australian Government Analytical Laboratories)은 IFIP를 대신하여 모든 식품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는 호주식품공전의 기준·규격과 규제사항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줄일 수 있고 식품이 호주에 도착한 이후 부적합되어 통관이 지연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6. 부적합 식품에 대한 사후 조치

(What happens to food that doesn't comply)

부적합 판정된 식품의 처리에 관하여는 검사원과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판정될 경우, 이후에 수입하는 식품에 대하여 정정조치하라는 통보가 전달된다.

또한 위반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재가공할 수도 있다. 특히 표시기준 위반인 경우에 그렇다.

부적합 식품을 반출할 수는 있으나 심각한 경우, AQIS에서는 부적합식품에 대한 폐기 조치를 취할 것이다.

7. 인증서(Certification)

AQIS는 검사, 시료채취 및 분석의 대체 방법으로, 검사증명서를 받고 있으며 그 증명서로 특정 식품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협정을 여러 국가와 체결하고 있다.

현재 협정체결국은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 - 농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싱가포르 -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및 일차 생산부(Primary Production Department), 수산과(Fisheries Division)

태 국 -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산물의 수출 검사 및 인증센터(Centre for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수산부(Department of Fisheries)

캐 나 다 - 해양수산부(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노르웨이 - 유 및 유제품관리연구원(Control Institute for Milk and Dairy Products)

AQIS는 이외의 국가와도 인증제도 타당성을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

위 국가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첨부한 식품은 일반적으로 정밀검사없이 통관된다. 그러나 검사담

당자가 특정식품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 목적이나 사건 발생으로 인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도 있다.

8.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AQIS는 외국 제조공장과 품질보증협정을 개시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고 있다.

품질보증협정에 의거하여 수출회사는 호주 식품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을 수출한다는 증명 수단으로 품질관리제도 문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본 제도는 품질관리규격인 ISO 9000 계열을 근거로 해야 한다.

QA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려면 지역 AQIS 사무실로부터 “AQA 편람(Handbook)”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다.

9. 수수료(Charging)

1992/93 검사료는 식품당 30분에 88\$이며 식품통관수수료는 식품당 30\$이다.

인증서를 첨부한 식품은 수수료를 20\$만 지불하면 된다.

단일 화물에 여러 식품이 함께 있는 경우 - 수입식품검사프로그램에 해당됨 - 화물통관수수료는 개별통관승인을 위해 각각 지불되어야 한다.

수입업자는 AGAL에서 실시한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상기한 수수료는 1992/1993 가격표다. 현재의 검사 및 분석비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지역수입식품검사사무소에 확인하여야 한다.

10. 위해식품(Risk categorized food commodities)

토마토 및 토마토제품통조림

치즈(선택)

코코넛

갑각류

무화과

어류(선택)

마리나라 믹스

연체동물

버섯(통조림)

홍합

파프리카

계란을 함유한 파스타제품

땅콩

주석용기에 담근 초절임야채

피스타치오넛

가리비

해초 및 켈프

조사오염 가능 지역의 식품을 선정

훈연진공포장어류

딸기

참치

상기한 목록은 변경될 수 있다.

II. 수입식품의 표시¹⁾

1. 일반 표시규격(General labelling standard)

가. 호주식품공전(Food Standards Code ; FSC)의 규격 A1에 일반 표시 사항이 기술되어 있음.

나. 제품명

1) 이 내용은 수입포장 포장규정(Labelling Requirement for Imported Packaged Food)를 인용한 자료임.

- 모든 포장 식품은 제품명 또는 명칭이 있어야 하며, 그 크기는 최소 높이 3mm이상이어야 함.
- 제품의 특성과 제품명이 FSC에 기술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제품명이 기술되어 있어야 함.
- 제품이 FSC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절한 제품명이 있어야 함.
- 적절한 제품명은 식품의 특성을 잘 나타내야 하며, 소비자에게 혼란, 오인, 기만을 주어서는 안됨.
- 소비자가 정하여진 자사 제조용 원료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나 관련 서류가 함께 있어야 함.

다. 이름과 주소

- 회수 목적을 위하여 호주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함.
- 식당용과 같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는 경우 수입업자의 명칭과 주소로도 같음할 수 있음. 여러 겹의 포장으로 되어 속포장으로 판매되는 경우 속포장에도 기록을 하여야 함.
- 주소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록하며, 최소 높이가 1.5mm이상이어야 함.

라. 롯트의 확인

- 롯트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특정 포장 제조한 것으로 FSC는 롯트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충전일' 또는 '유효기간'으로 이를 같음할 수 있음.
- 롯트번호는 제조자가 표시 또는 코드로 적을 수 있으며, 크기 또는 색 등과 같은 것이 정하여 있지 않음.

마. 원산지

- 제조국이 기록되어야 함. 제조자 주소에 국가가 있는 경우는 원산지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날짜 표시

- FSC의 A2는 날짜 표시사항에 대해 기술하였음.
- 호주에서 판매되는 사용가능 기간이 2년이하인 모든 식품은 최대사용기간을 기록하여야 함. 이는 적절하게 보관되었을 때 식품으로서의 건전성, 특성 및 품질을 유지하는 기간임.
- 날짜표시는 최단 유통기간에 따라 달라짐.
 - 유통기간이 7일 미만의 매우 짧은 경우
 - 유통기간이 7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
 - 유통기간이 90일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사용기한(Use by)', '품질유지(Best before)', 또는 '포장일(Packing date, Packing on 또는 PKD)'로 표시해야 함.
- 특별한 저장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기록하여야 함.
- 날짜표시는 대문자로 높이가 3mm이상이어야 하며, 색을 사용하지 않고 각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높이가 4.5mm이상이어야 함.

사. 중량

- FSC에는 무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와 지역(Territory)에서 각각 정하고 있음.
- 각 포장에는 실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차 포장에는 소포장의 내용량과 개수를 표시하여야 함.

아. 원료의 표시

- FSC에서는 기술된 대부분의 제품에 대하여 원료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원료명은 지정된 명으로 기록하되, 지정된 명이 없는 경우는 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기록하여야 함.
- 원료의 분류를 잘못 읽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FSC A1의 (5)(f)에 기술되어 있음.
-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제번호 또는 구별번호와

전체 이름을 기록하여야 함.

- 이산화황이 25mg/kg이상 함유된 식품의 경우 이를 성분표시장소 또는 다른 장소에 따로 표시하여야 함.
- 인공감미료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 이를 성분 표시부분과 다른 장소에 따로 표시하여야 함.
- 포장의 면적이 100cm² 이하인 제품에 대하여는 예외조항이 적용됨. ‘면실유에 담긴 홍합’, ‘건조 코코넛’ 등과 같이 제품명이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원료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급식업자 등에게 판매되는 제품과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제품에는 동봉 서류의 문서에 원료를 표시할 수 있음.

2. 일반 인쇄 요건(General print requirements)

가. 모든 문장, 내용 등의 표기는

- 영어로 기록되어야 하며,
- 깨끗하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 표시를 읽는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 FSC에서 예외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크기, 색, 모양의 활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 배경과 구별이 가는 색이어야 함.

나. 활자의 최소 크기(높이)는 요구되는 표시에 따라 다음

- 제품명(제품명 또는 적절한 명칭)과 날짜표시 3mm이상
- 이름과 주소(가능한 경우 수입업자 포함), 롯트 표시, 원산지과 성분표시는 최소 1.5mm이상

3. 제한과 금지(Restrictions and prohibitions)

- 가. 특정정보와 주장은 제한된 사항에서만 사용 가능함.

나. 상품명 : 상품명(trade name), 공상명(fancy name) 과 회사명(business name)은 거짓 또는 오인하여 임힐 수 있어서는 안됨.

다. 영양표시 : 식품표시는 일반 또는 특정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으며 본 규정에 대하여는 FSC A1(13)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라. 기타 강조표시 : 다음과 같은 강조표시는 금지되어 있음.

- 질병 치료와 예방에 관한 표시
- 약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
- 특별 식이요법을 위한 식품에 대한 것은 FSC Standard R1에 따라야 함.
- 체중감량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어떠한 분석결과의 사용

마. 단어와 표현 : 일부 단어와 표현은 금지되어 있음. 다불포화성(polyunsaturated), 순수(pure), 천연(natural), 유기(organic), 저알콜(low alcohol), 무알콜(non alcohol), 건강(health), 비타민 강화(vitamin enriched) 등과 같은 표현은 유관 규격을 참조하여 사용하여야 함.

바. 그림과 디자인 : 조리 후의 그림인 것은 그 사실을 “recipy” 또는 “Serving Suggestion”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됨.

수입식품과 관련된 용어 약자

AQIS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IFIP	Imported Food Inspection Program
NFA	National Food Authority
ACS	Australian Customs Service
AGAL	Australian Government Analytical Laboratories
QA	Quality Assurance

AQA Approved Quality Assurance
ISO 9000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sation
9000

NEW SOUTH WALES
Phone 02 364 7300
Fax 02 364 7290

추가정보를 위한 연락처

CANBERRA
Phone 06 272 4725, 06 272 4783,
06 272 3097
Fax 06 272 3682

QUEENSLAND
Phone 07 3860 8517, 07 3860 8547
Fax 07 3860 8550

TASMANIA
Phone 002 332 502
Fax 002 332 552

SOUTH AUSTRALIA
Phone 08 305 9744
Fax 08 305 9820

VICTORIA
Phone 03 9246 6850
Fax 03 9246 6867

WESTERN AUSTRALIA
Phone 09 311 5415
Fax 09 455 2325

NORTHERN TERRITORY
Phone 089 811 211
Fax 089 815 595